연번	지 적 사 항	처 분
1	일반직공무원 정원 초과 승진 임용 부당	
	○ 「국가공무원법」제56조에 따르면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ㅇ경징계(1명)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고,「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24조 제1항 및 제2항에	ㅇ경고(1명)
	따르면 공무원의 정원은 행정기관별·계급별·직급별로	
	배정한다고 되어 있으며, 행정기관의 장은 정원을 초과	ㅇ주의(1명)
	하여 공무원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도,	
	- 국립국제교육원은 2019. 2. 1. 기준 행정주사 정원이	
	16명이고 현원이 13명으로 행정주사보를 행정주사로	
	승진시킬 수 있는 결원이 3명임에도, '2019년 일반직 공무원 승진임용 계획(기획조정부-871)'을 수립하여,	
	2019. 2. 14. 개최된 인사위원회에서 A(1순위), B(3순위),	
	C(2순위), D(4순위), E(5순위) 등 5명을 행정주사 승진	
	대상자로 결정한 후, 2019. 2. 15. 정원을 초과하여	
	위 5명을 행정주사로 승진 임용한 사실이 있음	

연번	지 적 사 항	처 분
2	징계자 성과급 지급 부적정	
	ㅇ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인사혁신처, 2018)」에 따르면	ㅇ경고(1명)
	소속장관은 평가대상기간 중 직무상의 의무 위반이나,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	ㅇ주의(2명)
	하는 행위를 한 사유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에 대하여는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되「국가공무원법」	ㅇ시정(회수)
	제79조 및 「공무원징계령」 제1조의3에 따른 중징계, 「국가공무원법」제83조의2 제1항 등에 따른 징계 사유의	- 부적정하게 지급한
	시효가 5년인 비위, 성폭력범죄, 성매매, 성희롱 및	성과급 1,201,920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는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에서	원을 관련자로부터 회수하여 관련
	제외한다고 되어 있고, 「국가공무원법」제78조의2 제1항,	회계에 세입처리
	제83조의2 제1항에 따르면 금전, 물품, 부동산, 향응	하기 바람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한 경우에는 징계 등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징계의결 등의 요구는 하지 못	
	한다고 되어 있는데도,	
	- 국립국제교육원은 2018. 4. 17. 2018년 성과급(평가기간 :	
	2017.1.1.~2017.12.31.)을 지급하면서 2017. 11. 29. '감봉3개월	
	(「국가공무원법」제78조) 및 징계부가금 2배(「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 처분을 받은 F에게 성과급 1,201,920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음	

연번	지 적 사 항	처 분
3	복무 미처리	
	ㅇ「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9조에 따르면 공무원의 1일	ㅇ주의(1명)
	근무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하며, 점심	
	시간은 낮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로 하고,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제8조에 따르면 공무원이 휴가·지각·조퇴 및	
	외출하려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인사혁신처 제104호)」	
	제4장 유연근무제에 따르면 모든 유연근무자는 복무	
	관리시스템 등을 통해 출·퇴근 등록을 하여야 하고,	
	원격근무(재택근무)시 사적 사유에 의해서 임의로 근무	
	장소를 무단이탈 할 수 없는데도,	
	- 국립국제교육원 G는 2020. 9. 3.(목) 소속 부서장의	
	사전 승인 없이 출근시각(09:00)보다 늦은 9시 15분에	
	출근하는 등 【붙임】 "복무 처리 부적정 현황"과	
	같이 2020. 9월부터 2021. 5월까지 위 G는 총 10회에	
	걸쳐 복무처리를 하지 않거나, 유연근무제(원격근무	
	포함)를 실시하면서 복무관리시스템(e-사람)에 출퇴근	
	미등록 및 원격근무(재택근무)지를 이탈한 사실이 있음.	

#### 복무 처리 부적정 현황

			복무 1	기처리 현황	둥		
연번	일자	요일	내 <del>용</del>	복무미처리 시간			
			<u> </u>	시작시각	끝시각	계(분)	
1	2020-09-03	목	지 각	9:00	9:15	15	
2	2020-09-09	수	지 각	10:00	10:40	40	
3	2020-09-11	금	재택근무 중 외출	9:30	11:00	90	
4	2020-10-12	월	지 각	9:00	9:10	10	
5	2020-10-13	화	지 각	9:00	9:10	10	
6	2020-12-11	금	재택근무 중 외출	13:00	14:30	90	
7	2020-12-15	화	유연근무 출근 미등록	-	-	-	
8	2020-12-16	수	유연근무 출퇴근 미등록	-	-	-	
9	2021-02-22	월	지 각	8:30	8:50	20	
10	2021-05-21	금	재택근무 중 외출	11:20	13:20	60	
	합 계 !						

연번	지 적 사 항	처 분
4	법인카드 포인트 세입 미조치	
	ㅇ「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기재부, 2018~2020)」및	ㅇ주의(7명)
	「국립국제교육원 정부구매카드 사용·관리 요령」에	
	따르면 중앙관서의 장은 재정사업을 신용카드 등을	
	통해 집행함에 따라 발생하는 캐시백(cash back) 등	
	부수적인 수익이 있을 경우 전액 국고로 세입조치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도,	
	- 국립국제교육원은 2016. 2월 이후 법인카드 이용실적에	
	따라 발생한 법인카드 포인트 합계 451,744점을	
	2021. 5월 감사일 현재까지 현금으로 전환하여 관련	
	회계에 세입조치하지 않은 사실이 있고,	
	※ 감사기간 중인 2021. 5. 21. 포인트 371,979점(371,970원 상당, 원단위 절사) 세입 처리	
	- 위 합계 포인트 451,744점 중 79,765점(2016.2.~2016.5.	
	발생분)은 【붙임】"법인카드 포인트 소멸 현황"과	
	같이 2016. 2월 이후 5년 이상 현금으로 전환하지	
	않아 2021. 2월부터 2021. 5월까지 순차적으로 소멸된	
	사실이 있음	

### 법인카드 포인트 소멸 현황

연번	포인트명	발생년월	소멸년월	소멸포인트(점)
1	법인카드포인트	2016. 2.	2021. 2.	477
2	법인카드포인트	2016. 3.	2021. 3.	70,498
3	법인카드포인트	2016. 4.	2021. 4.	2,392
4	법인카드포인트	2016. 5.	2021. 5.	6,398
	합 계			79,765

연번	지 적 사 항	처 분
5	수당 지급 부당 ○ 「국가공무원법」제56조 및「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ㅇ경징계(1명)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르면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회계관계 직원은 법령, 그 밖의 관계 규정 및 예산에 정하여진 바에 따라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2018.1.18.시행)」 제11조의3 제5조에 따르면 육아휴직 대상자가 육아 휴직을 대신하여 「공무원임용령」제57조의3 제2항에 따른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아래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데도,	<ul> <li>주의(1명)</li> <li>이시정(회수)</li> <li>부당하게 지급한 육아기 근로시간</li> </ul>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 지정일 기준 월 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 - 봉급액의 BD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x (150만원을 상한액으로 하고, 50만원을 하한액으로 한다) 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	
	- 국립국제교육원 H*는 2018. 2. 5.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으로 지정(매주 월~금, 9시 30분~16시 30분 근무)받은 후, 기본급(시간선택제전환에 따라 기존 기본급의 75% 지급)에 더해 지급되는 본인의 2018. 2월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을 산정하면서 수당 계산식 대신 '월 봉급액의 8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적용하여 수당액을 1,203,520원으로 산정하여 정상지급액(257,890원)보다	

연번 지 적 사 항	처 분
945,630원을 과다 지급하는 등 【붙임】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수당 과다 지급 현황"과 같이 2018. 2.부터	
2018. 8.까지 위 H가 보수업무를 담당하면서 자신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을 잘못 산정하여 합계	
6,361,470원을 과다 지급한 사실이 있음	
* 2018. 1. 1.부터 2020. 6. 30.까지 국립국제교육원 보수업무 담당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 과다 지급 현황

(단위 : 원)

연번	구분	지급일	지급 대상자	실제 지급액	정상 지급액	과다 지급액	비고
1	2018. 2월분	2018.2.14.	Н	1,203,520	257,890	945,630	발령일(2.5) 기준 일할계산
2	2018. 3월분	2018.3.16.	Н	1,203,520	300,880	902,640	
3	2018. 4월분	2018.4.17.	Н	1,203,520	300,880	902,640	
4	2018. 5월분	2018.5.17.	Н	1,203,520	300,880	902,640	
5	2018. 6월분	2018.6.15.	Н	1,203,520	300,880	902,640	
6	2018. 7월분	2018.7.17.	Н	1,203,520	300,880	902,640	
7	2018. 8월분	2018.8.17.	Н	1,203,520	300,880	902,640	
	힙	계		8,424,640	2,063,170	6,361,470	

연번	지 적 사 항	처 분
6	법인카드 사용·관리 내부지침 관리 소홀	
	○ 「국고금 관리법」제24조 제5항 및「2018~2021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르면 관서운영경비는 정부구매카드를 사용하여야 하고, 업무추진비 집행은 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는 등 객관적이고 투명한 회계집행을 위해 법인(클린)카드 사용을 권장하고 있으며, 별도의 지출 상한액을 규정하고 있지 않는데도, - 국립국제교육원은 2013. 1. 14. 「국립국제교육원 정부 구매카드 사용・관리요령(2013.1.14. 제정)」을 제정하고 2021. 5월 감사일 현재까지 별도의 개정 없이 일반	<b>○통보</b> - 법인카드 사용· 관리 내부지침을
	수용비(210-01)에서 소모성물품 건당 구입액 10만원이하는 정부구매카드 사용 가능(단, 연수 운영에 따른 경비한도는 건당 50만원)하고, 기타 정부구매카드의 건당사용 한도액은 500만원 이하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 2018. 2. 19. 소모성물품인 문구용품 구입비 998,900원을 법인카드로 결제하는 등【붙임】"법인카드(일반수용비 등) 건당 한도초과 현황"과 같이 2018. 2.부터 2021. 4.까지 위 문구용품 등 총 47건을 법인카드 자체지침에서 정한 일반수용비(소모성물품) 및 기타 정부구매카드 건당 한도액을 초과하여 합계 186,347,330원을 집행한 사실이 있음	

#### 법인카드(일반수용비 등) 건당 한도초과 현황

#### ① 일반수용비 관련

(단위 : 워)

<u></u> 연번	결제일자	 카드번호	결제금액	가맹점명	주 소	(단위 : 원) <b>업종명</b>
		//드턴모 		71343	7 2	
1	2018. 2. 19.	-	998,900	-	-	문구용품
2	2018. 2. 23.	-	1,205,400	-	-	문구용품
3	2018. 8. 19.	-	572,400	-	-	문구용품
4	2018. 8. 28.	-	1,263,520	-	-	문구용품
5	2018. 12. 6.	-	690,000	-	-	문구용품
6	2018. 12. 19.	-	2,104,290	-	-	문구용품
7	2019. 4. 24.	-	2,876,380	-	-	문구용품
8	2019. 7. 3.	-	1,989,490	-	-	문구용품
9	2019. 7. 11.	-	1,077,900	-	-	문구용품
10	2019. 8. 14.	-	519,120	-	-	문구용품
11	2019. 10. 18.	-	931,960	-	-	문구용품
12	2019. 12. 18.	-	1,368,030	-	-	문구용품
13	2020. 1. 7.	-	3,043,130	-	-	문구용품
14	2020. 2. 14.	-	637,380	-	-	문구용품
15	2020. 2. 14.	-	637,380	-	-	문구용품
16	2020. 2. 14.	-	2,126,970	-	-	문구용품
17	2020. 2. 18.	-	3,645,000	-	-	문구용품
18	2020. 4. 23.	-	2,049,560	-	-	문구용품
19	2020. 7. 1.	-	2,399,380	-	-	문구용품
20	2020. 8. 6.	-	2,849,240	-	-	문구용품
21	2020. 8. 20.	-	624,570	-	-	문구용품

연번	결제일자	카드번호	결제금액	가맹점명	주 소	업종명
22	2020. 11. 4.	-	917,540	-	-	문구용품
23	2021. 1. 20.	-	4,908,550	-	-	문구용품
24	2021. 2. 17.	-	2,673,850	-	-	문구용품
25	2021. 2. 17.	-	540,630	-	-	문구용품
26	2021. 4. 13.	-	900,960	-	-	문구용품
27	2021. 4. 21.	-	2,946,530	-	-	문구용품
	합	계	46,498,060			

#### ② 건당 500만원 이상 관련

연번	결제일자	카드번호	결제금액	가맹점명	주소	업종명
1	2018. 1. 9.	-	5,927,100	-	-	항공사
2	2018. 2. 27.	-	8,500,000	-	-	일반한식
3	2018. 2. 27.	-	8,000,000	-	-	일반한식
4	2018. 4. 18.	-	6,455,400	-	-	항공사
5	2018. 5. 16.	-	7,800,000	-	-	일반한식
6	2018. 5. 17.	-	7,800,000	-	-	일반한식
7	2018. 5. 18.	-	7,800,000	-	-	일반한식
8	2018. 5. 25.	-	7,800,000	-	-	일반한식
9	2018. 6. 8.	-	7,593,900	-	-	항공사
10	2018. 6. 8.	-	5,143,200	-	-	항공사
11	2018. 9. 1.	-	5,680,000	-	-	특급호텔
12	2018. 10. 5.	-	5,295,000	-	-	갸타숙박업
13	2018. 11. 23.	-	5,074,400	-	-	항공사
14	2018. 12. 14.	-	7,560,000	-	-	일반한식
15	2018. 12. 15.	-	16,000,000	-	-	갸타쉭업
16	2019. 1. 18.	-	5,600,000	-	-	일반한식
17	2019. 7. 12.	-	5,280,000	-	-	일반한식
18	2020. 7. 31.	-	5,175,000	-	-	기타음 료식품
19	2020. 8. 3.	-	5,472,000	-	-	기타음 료식품
20	2020. 10. 19.	-	5,893,270	-	-	공공요금/ 대상
	합	계	139,849,270			

연번	지 적 사 항	처 분
7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보험 미가입	
	○ 「국고금 관리법」제45조 및「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ㅇ주의(2명)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르면, 국가의 예산 및 회계에	
	관계되는 사항을 정한 법령에 따라 국가의 회계 사무를	○통보
	집행하는 수입징수관, 재무관, 지출원, 출납원, 물품관리관,	- 회계관계공무원의
	물품운용관, 물품사용 공무원 및 회계 사무에 준하는	재정보증보험을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은 재정보증 없이는 그 직무를	가입하기 바람
	담당할 수 없다고 되어 있고,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의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규정」제4조 제1항에 따르면	
	교육부장관과 그 소속기관의 장은 회계관계공무원으로 임명된 사람에 대하여 그 임명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하도록 해야 한다고 되어있는데도,	
	- 국립국제교육원은 2020. 12. 31. 회계관계공무원(재무관	
	포함 5개 직위 총 7명)의 재정보증보험이 만료되었음에도	
	2021. 5. 감사일 현재까지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하여	
	재정보증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채 회계업무를 담당 하게 한 사실이 있음	
	아게 인 사실의 처럼	

연번	지 적 사 항	처 분
8	가족수당 및 맞춤형복지비 수령 부적정	
	○ 「국가공무원법」제56조에 따르면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ㅇ경고(1명)
	준수하여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0조 및「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	ㅇ주의(6명)
	지침(인사혁신처 예규)」에 따르면 부양가족이란 부양의무를	- 1 -1(0 8)
	가진 공무원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는 사람	
	으로서 해당 공무원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시정(회수)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을 말하고, 가족수당을 지급	- 부적정하게 수령한
	받으려는 공무원(해외파견 등의 사유로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기 <del>족수</del> 당 2,900,000 원과 맞춤형복지비
	공무원은 그의 가족)은 부양가족신고서를 소속 기관장에게	450,000원, 합계
	제출(재외공무원의 부양가족은 배우자 및 자녀로 한정하며,	3,350,000원을
	재외공무원의 배우자에 대한 부양가족수당은 배우자가 주재국에	관련자들로부터
	도착한 날, 그 밖의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회수하여 관련
	다음 달부터 재외근무수당 월액의 1/4상당 금액을 지급)하여야	회계에 세입조치
	하고, 부양가족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도 같으며, 가족	하기 바람
	수당은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로부터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분까지 지급하여야 하고, 「2017	
	~2018년도 맞춤형복지제도 시행 계획 알림, 및 「공무원	
	보수등의 업무지침 중 맞춤형 복지제도 업무처리기준」에	
	따르면, 맞춤형복지 점수는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연도별로 부여하며 맞춤형복지비의 가족복지점수 배정	
	대상은 가족수당 지급대상인 부양가족과 동일하게	
	되어 있는데도,	
	- 국립국제교육원 I는 2019. 9. 2. 부친이 사망하였음에도	
	부양가족 변동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9. 10.부터	
	2021. 5. 감사일 현재까지 가족수당 및 맞춤형복지비	

연번	지 적 사 항	처 분
	합계 450,000원을 수령하는 등【붙임】"가족수당 및	
	맞춤형복지비 부적정 수령 현황"과 같이 2018. 1.부터	
	2021. 5.까지 위 I 등 교직원 7명은 사망 등으로 부양	
	가족에 변동이 발생하였음에도 부양가족 변동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가족수당 및 맞춤형복지비 합계	
	3,350,000원을 수령한 사실이 있음.	

#### 가족수당 및 맞춤형복지비 부적정 수령 현황

(단위: 원)

クロオコ						부당 수령	내역	 청소			
연번	직위(급)	성명	수당지급	관계	가족수당		맞춤형복지비		환수	비고	
	, ,		대상자		기간	금액	기간	금액	대상액		
1	-	I	-	부	'19.10.~'21.5. (20개월)	400,000	'20.~'21. (2년)	100,000	500,000	2019. 9. 2. 부친 사망	
2	_	_	-	부	'18.1.~'18.8. (8개월, 부)	<b>600,000</b>	'19.~'21.	300,000	900,000	2018.1월~2021.5월분 (휴직기간 '18.9.1~'20.6.3 제외)	
	_	-	-	-	(3년) 모 (11개월, 부·모)	300,000	900,000	※e-사람 시스템으로 <u>2018.1.3.</u> 부모의 <b>부양가족 상실(해지) 신청</b>			
3	-	-	-	부	<b>′21.</b> 5.	20,000	-	-	20,000	2021. 4. 30. 부친 전출 (2021. 5월초 신고)	
4	-		-	부	'21.2.~5. (4개원)	160,000	_		160,000	2021. 1. 8. 분가(부, 모)	
4			-	모					100,000	2021. 1. 0. 2/1(1, 4)	
5			-	-	시부	′18.9.~′21.5.	1 220 000			1,320,000	본인 재외교육기관 파견
3	-	-	-	시모	(33개월)	) 1,320,000	1,320,000	(2018.8.21.~2021.8.20.)			
6	-	-	-	모	'20.4.~'21.5. (14개월)	280,000	'21.(1년)	50,000	330,000	2020.4월~2021.5월 세대분리	
7	-	-	-	배우자	'21.3.~'21.5. (3개월)	120,000			120,000	재외공무원 배우자 출국('21.2.11.) 재외수당으로 지급	
		합 겨	]			2,900,000		450,000	3,350,000		

연번	지 적 사 항	처 분
9	시설공사 폐기물 처리비 미정산 및 전문공사 계약 부적정	
	○ 「폐기물관리법」제13조,「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14조 및 「공사계약 일반조건」(기재부계약예규) 제40조에 따르면,	ㅇ경고(1명)
	누구든지 폐기물을 처리하려는 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제7조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을 따라야 하고,	ㅇ주의(4명)
	시행령」제7조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을 따라야 하고, 공사·작업 등으로 인하여 5톤 미만으로 발생되는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 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폐기물의 처리를 대행하는 자나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설치·운영자에게 운반 처리할 수 있으며, 계약담당자는 대금 지급 시 공사내역서에 계상된 폐기물처리 비용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를 건설사업자로부터 관련 영수증을 제출받아 이를 확인한 후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건설산업기본법」제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제8조 제1항에 따르면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하며, 1건 공사의 공사예정금액이 1천5백만원 이상인 전문공사의 경우해당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서는 건설업을 할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도,	○통보 - 시설공사 폐기물 미 정 산 금 액 1,956,020원에 대하여 정산을 실시하고, 미정산 잔액은 해당업체 로부터 회수하여 관련 회계에 세입 조치하기 바람 <별도조치>
	및 처리 비용이 공사금액에 포함되어 있음에도 이에 대한 정산을 실시하지 않고 폐기물 처리비 1,430,000원 전액을 지급하는 등【붙임】"시설공사 폐기물 처리비	

연번 지 적 사 항	처 분
정산 현황"과 같이 2019. 8월부터 2020. 10월까지 우	1
영어교육센터 기숙사 외벽 보수 공사 등 3건의 공사를	<u> </u>
추진하면서 폐기물의 운송 및 처리 비용이 공사금액어	1
포함되어 있음에도 이에 대한 정산을 실시하지 않고	<u>1</u>
업체에서 청구한 폐기물 처리비 4,816,020원 전액을	2
지급한 사실이 있음	
※ 감사 기간 내(2021. 5. 27.), 【붙임】 연번 1, 2에 해당하는 계약상대자로부터 폐기물 계량 영수증 및 세금 계산서를 제출받음	
■ 특히, '영어교육센터 기숙사 외벽 보수 공사('20.10.26. <sub>'</sub>	~
11.27.)'는 공사예정금액이 1천5백만원 이상인 전문공사임	]
에도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
바 있음	

#### 시설공사 폐기물 처리비 정산 현황

(단위 : 원)

연번	계약일	공사계약명	계약상대자 (사업자번호)	계약금액	폐기물비 정산대상	제주분원 검수자	정산결과	<b>비 고</b> (해당 전문공사업종)
1	'19.08.07.	영어교육센터 기숙사 외벽 보수 공사 ('19.08.12.~09.10.)	00	21,000,000	1,430,000	-	시후정산 (감사 기간 내 정산 확인)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
2	'20.09.04.	영어교육센터 기숙사 외벽 마감재 교체 공사 ('20.9.4.~10.07.)	00	21,605,920	1,430,000	1	"	무슨   소설 · 8조 6시 됩
3	'20.10.26.	영어교육센터 기숙사 외벽 보수 공사 ('20.10.26.~11.27.)	-	21,550,320	1,956,020	ı	미정산	전문공사 면허 없음
		합 계	]		4,816,020			

연번	지 적 사 항	처 분
10	직원 공가 사용 부적정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19조,「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ㅇ경고(4명)
	공무직 등 관리규정('19.5.31.~)」(구.「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등 관리규정」) 제22조 및 「국립국제	ㅇ주의(6명)
	교육원 취업규칙」제55조에 따르면「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을 받을 때에는 직접적으로	○통보
	필요한 기간에 대하여 공가를 사용한다고 되어 있는데도,	- 향후 관련 규정에
	- 국립국제교육원 J는 2017. 12. 22.(금)에 건강검진을	따라 공가 사용 등
	받고도 2017. 12. 29.(금) 건강검진을 사유로 공가를	복무관리를 철저히 하기 바람
	사용하는 등 【붙임】 "직원 공가(건강검진) 사용 부적정	
	현황"과 같이 위 J 등 직원 10명은 건강검진을 사유로	
	공가를 사용하고도 공가일에 건강검진을 받지 않고	
	건강검진은 다른 날 실시하거나,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사실이 있음	
	※ 연가보상비 및 연차수당 과오지급 내역은 확인되지 아니함	

### 직원 공가(건강검진) 사용 부적정 현황

연번	직급	성명	생년월일	연도	공가사용일 (복무)	실제건강 검진일	비 고 (실제건강검진일 복무상황)
1	-	-	-	2017	2017.12.29.(금)	2017.12.22.(금)	'17.12.22. 연가
2	-	-	-	2020	2020.11.24.(화)	2020.11.19.(목)	′20.11.19. 외출(16:00~16:30)
3	-	-	-	2017	2017.12.26.(화)	2017.08.21.(월)	'17.8.21. 연가
4	-	-	-	2018	2018.12.24.(월)	2018.11.24.(토)	
п				2017	2017.10.19.(목)	2017.12.09.(토)	
5	5 -		-	2019	2019.12.13.(금)	2019.11.16.(토)	
6	-	-	-	2018	2018.04.20.(금)	미실시	
7	-	-	-	2018	2018.12.31.(월)	2018.12.29.(토)	
8	-	-	-	2018	2018.05.21.(월)	미실시	
9	-	-	-	2020	2020.12.14.(월)	2020.11.30.(월)	'20.11.30. 비번(경비)
10			-	2017	2017.12.01.(금)	2017.11.03.(금)	'17.11.3. 연가
10	-	-		2020	2020.01.29.(수)	2020.05.30.(토)	

연번	지 적 사 항	처 분
11	물품관리 및 재물조사 부적정	
	○ 「물품관리법」제19조, 제26조 및 제30조,「물품관리 업무	ㅇ경고(2명)
	매뉴얼(조달청)」에 따르면 중앙관서의 장은 연 1회 그	
	소관 물품에 대한 정기재물조사를 실시하고, 정기재물	ㅇ통보
	조사의 보고서를 조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물품	- 물품의 실제현황과
	관리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이 법과 그	물품대장이 일치
	밖의 물품관리에 관한 법령을 준수하는 것 이외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사무에 종사하여야 하고, 물품은	하고 분실 물품에 대해서는 「물품
	항상 사용하거나 처분할 수 있도록 선량한 관리자의	관리법, 등 관련
	주의로써 국가의 시설에 보관하여야 하며, 물품재물	법령에 따라 조치
	조사 결과 초과품, 부족품 등에 대한 재물조정이나	하기 바람
	손(망)실 처리를 하고, 불용품으로 조사된 물품은 그	
	상태를 재조사하여 불용결정을 취하며, 사용가능품은	
	관리전환, 매각, 양여 등으로 처분하고 폐품은 해체	
	또는 폐기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제6항에 따르면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면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서, 설계서,	
	그 밖의 관계 서류에 의하여 검사하거나 소속 공무원	
	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필요한 검사를 하게 하여야	
	하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	
	상대자의 계약이행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도,	

### 2020년 하반기 수시 재물조사 결과 부존재 물품 현황(본원)

(단위: 원, 점)

순	품명	규격명	운영부서	사용 위치	취득일자	취득 수량	취득가액	장부가액	장부상 물품현황	실제 물품 현황	비고
1	냉장냉동 겸용장치	냉장고	-	창고	2010-08-17	1	228,000	228,000	존재	부존재	
2	냉장냉동 겸용장치	-	-	창고	2010-08-17	1	228,000	228,000	존재	부존재	
3	신발장	-	-	창고	2010-08-16	1	220,000	220,000	존재	부존재	
4	신발장	-	-	창고	2010-08-16	1	220,000	220,000	존재	부존재	
5	레이저 프린터	-	-	창고	2010-03-29	1	594,000	1,000	존재	부존재	
6	냉장냉동 겸용장치	-	-	창고	2009-08-20	1	156,000	156,000	존재	부존재	
7	냉장냉동 겸용장치	-	-	창고	2009-08-20	1	156,000	156,000	존재	부존재	
8	냉장냉동 겸용장치	-	-	창고	2009-08-20	1	156,000	156,000	존재	부존재	
9	냉장냉동 겸용장치	-	-	창고	2009-08-20	1	156,000	156,000	존재	부존재	

순	품명	규격명	운영부서	사 <del>용</del> 위치	취득일자	취득 수량	취득가액	장부가액	장부상 물품현황	실제 물품 현 <b>황</b>	비고
10	냉장냉동 겸용장치	-	-	창고	2009-08-20	1	129,000	129,000	존재	부존재	
11	이동형 파일서랍	-	-	창고	2008-11-03	1	88,000	88,000	존재	부존재	
12	스캐너	-	-	창고	2008-04-21	1	264,000	264,000	존재	부존재	
13	회의용 탁자	-	-	창고	2009-03-19	1	104,500	104,500	존재	부존재	
14	수강용 탁자	-	-	창고	2009-03-17	1	217,700	217,700	존재	부존재	
15	수강용 탁자	-	-	창고	2009-03-17	1	217,700	217,700	존재	부존재	
	합 계					15	3,134,900	2,541,900			

지 적 사 항	처 분
한국어능력시험위원회 운영 관리 소홀	
○ 「국립국제교육원 한국어능력시험 기본운영 규정(*19.12.31.	ㅇ기관경고
제정)」제15조에 따르면 한국어능력시험과 관련하여	ㅇ통보
주요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둘 수 있고,	- 한국어능력시험 시업
위원회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한국어능력시험위원회	계획, 운영 관리 및
규정」을 따르도록 되어 있으며, 「한국어능력시험위원회	그 밖에 한국어
규정」제2조에 따르면 한국어능력시험 사업 계획에 관한	능력시험에 관한
사항, 한국어능력시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사항 등 '한국어
한국어능력 시험에 관한 중요 사항은 한국어능력시험	능력시험위원회'
위원회 심의·자문을 받게 되어 있는데도,	심의·자문 사항은 규정에 따라 심의·
- 국립국제교육원은 '19.12. 「한국어능력시험위원회 규정」을	자문을 받기 바람
제정하고도 '20.6.까지 한국어능력시험위원회를 구성	, , , , , , , , , , , , , , , , , , , ,
하지 않고, '20.6. 한국어능력시험위원회 구성 이후에도	
한국어능력시험과 관련하여 주요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한 위원회를 한 번도 개최하지 않은 사실이 있으며,	
【붙임】"한국어능력시험 주요사항 미심의 현황"과	
같이 '20. 10. 16. 부터 '21. 5. 감사일 현재까지 "2021년	
한국어능력시험 사업 기본 계획" 등 4차례에 걸쳐	
한국어능력시험에 관한 주요 사항에 대해 한국어능력	
시험위원회 심의·자문을 받지 않고 한국어능력시험을	
운영한 사실이 있음	
	한국어능력시험위원회 운영 관리 소홀      「국립국제교육원 한국어능력시험 기본운영 규정(19.12.31.     제정)」 제15조에 따르면 한국어능력시험과 관련하여 주요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둘 수 있고, 위원회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한국어능력시험위원회 규정」을 따르도록 되어 있으며,「한국어능력시험위원회 규정」를 따르도록 되어 있으며,「한국어능력시험위원회 규정」 제2조에 따르면 한국어능력시험 사업 계획에 관한 사항, 한국어능력시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그 밖에 한국어능력 시험에 관한 중요 사항은 한국어능력시험 위원회 심의·자문을 받게 되어 있는데도,  - 국립국제교육원은 '19.12. 「한국어능력시험위원회 규정」을 제정하고도 '20.6. 까지 한국어능력시험위원회를 구성 하지 않고, '20.6. 한국어능력시험위원회 구성 이후에도 한국어능력시험과 관련하여 주요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한 위원회를 한 번도 개최하지 않은 사실이 있으며, 【붙임】 "한국어능력시험 주요사항 미심의 현황"과 같이 '20.10.16. 부터 '21.5.감사일 현재까지 "2021년 한국어능력시험 사업 기본 계획" 등 4차례에 걸쳐 한국어능력시험에 관한 주요 사항에 대해 한국어능력시험을 시험위원회 심의·자문을 받지 않고 한국어능력시험을

### 한국어능력시험 주요사항 미심의 현황

순	년도	구 분	심의·자문 여부	비 고
1	2020	2021년 한국어능력시험 사업기본계획	미심의	원장 결재('20.10.16.) 기획조정부-7957)
2	2020	2021년 상반기(제75~77회) 한국어능력시험 출제본부 운영 계획(안)	미심의	원장 결재('20.12.16. 기획조정부-10210)
3	2021	2021 한국어능력시험(TOPIK) 말하기 평가 운영 계획(안)	미심의	원장 결재('21.1.13. 기획조정부-289)
4	2021	2021 한국어능력시험(TOPIK) 말하기 평가 시범시행 출제본부 운영 계획(안)	미심의	원장 결재('21.3.8. 기획조정부-1883)

연번	지 적 사 항	처 분
13	「한국어능력시험 기본운영 규정」미비 등	
	ㅇ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제35조에 따르면 국립국제	ㅇ기관주의
	「한국어능력시험 기본운영 규정」미비 등	○기관주의 ○통보 - 한국어능력시험의 공정한 평가와 원활한 시험 시행을 위하여 한국어능력시험 관리에 필요한 주요 시항을 규정에 명시 하여 운영하기 바람 - 한국어능력시험 출제, 검토, 편집, 채점 위원 등에 대한 선정 기준, 절차, 선정 위원회 운영 방법 등을 규정에 명시하여 합리적 이고 투명한 절치를 거쳐 위원을 선정 운영하기 바람

[붙임]
TOPIK 성적우수자 초청연수 참가자 DB 미구축 현황

연번	참여국가	참여학교	학생명	참가 기간
1	이 집 트	-	-	
2	네 팔	-	-	
3	베트남	-	-	
4	인도네시아	-	-	
5	터 키	-	-	
6	러 시 아	-	-	
7	필 리 핀	-	-	
8	미 얀 마	-	-	'17.7.11. ~7.21.
9	인 도	-	-	
10	캐나다	-	-	
11	캄보디아	-	-	
12	몽 골	-	-	
13	싱가포르	-	-	
14	키르기즈공화국	-	-	
15	말레이시아	-	-	
16	대 만	-	-	
17	독 일	-	-	
18	말레이시아	-	-	'18.7.10.
19	몽 골	-	-	~7.20.
20	베네수엘라	-	-	
21	베트남	-	-	

연번	참여국가	참여학교	학생명	참가 기간
22	이 란	-	-	
23	인 도	-	-	
24	일 본	-	-	
25	카자흐스탄	-	-	
26	케 냐	-	-	
27	쿠 바	-	-	
28	타지키스탄	-	-	
29	태 국	-	-	
30	파라과이	-	-	
31	태 국	-	-	
32	미 얀 마	-	-	
33	인도네시아	-	-	
34	터 키	-	-	
35	필 리 핀	-	-	
36	라오스	-	-	
37	우크라이나	-	-	
38	베네수엘라	-	-	'19.7.9. ~7.19.
39	쿠 바	-	-	
40	스 페 인	-	-	
41	러 시 아	-	-	
42	카자흐스탄	-	-	
43	키리기스스탄	-	-	
44	네 팔	-	-	
45	캐나다	-	-	

연번	지 적 사 항	처 분
15	한국어능력시험 부정행위자 사후 관리 미흡	
	○ 「국립국제교육원 한국어능력시험 부정행위자 처리에	ㅇ기관주의
	관한 지침, 제13조에 따르면 부정행위의 경중에 따라	
	부정행위자 명단을 소속 기관(학교)에 통보하거나 부정	ㅇ통보
	행위자에 대한 수사를 의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 한 <del>자 등</del> 라 합TCHK)
	「한국어능력시험(TOPIK) 부정행위 방지 대책(′19.10.17.)」에	부정행위 방지를
	따르면 한국어능력시험(TOPIK)의 조직적 부정행위	위해 시행기관
	방지를 위해 시행기관 점검 및 감독 책무성을 강화	점검 및 유관기관
	하고 응시자격 제한 및 부정행위자에 대한 처벌 강화를	협조 사항 등의
	위하여 중대 부정행위(대리응시 등) 적발 시 경찰청에	
	수사의뢰 및 형사 고발 조치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한국어능력시험 사후 관리를 철저히
	강력하게 처벌하는 방안을 추진하도록 하였는데도,	하기 바람
	- 국립국제교육원은 '20. 7. 12. 제70회 한국어능력시험을	-1// 1 1
	시행하면서 중대 부정행위(대리응시)자 K에 대하여	
	시행기관(대학)이 유관기관 협조(경찰청 수사의뢰 및	
	고발조치, 법무부 비자 제한 및 강제 출국 조치 등) 요청한	
	사항에 대해 사후 관리를 하지 않는 등【붙임】	
	"한국어능력시험 중대 부정행위(대리응시)자 미관리	
	현황"과 같이 2020. 7.부터 2021. 5. 감사일 현재까지	
	한국어능력시험 중대 부정행위(대리응시)자 위 K 등	
	5명에 대하여 시행기관(대학)이 경찰청 등 유관기관에	
	보낸 협조 요청한 사항에 대해 사후 관리를 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붙임】 <u>한국어능력시험 중대 부정행위(대리응시)자 미관리 현황</u>

순	회차	시험일	국가	지역	시험장	영문성명	생년월일	조치시항	비고
1	70	'20.7.12.	한국	경기	-	-	-	해당 시험 성적 무효 처리 및 4년간 응시 자격 제한	미관리
2	70	20.7.12.	한국	강원	-	-	-	해당 시험 성적 무효 처리 및 4년간 응시 자격 제한	미관리
3	70	20.7.12.	한국	강원	-	-	-	해당 시험 성적 무효 처리 및 4년간 응시 자격 제한	미관리
4	73	20.11.15.	한국	대전	-	-	-	해당 시험 성적 무효 처리 및 4년간 응시 자격 제한	미관리
5	74	21.2.7.	한국	강원	-	1	-	해당 시험 성적 무효 처리 및 4년간 응시 자격 제한	미관리

연번	지 적 사 항	처 분
16	각종 위원회 참석 수당 지급 자체 규정 미정비	
	ㅇ 「'18~'21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기획재정부)」에	ㅇ기관경고
	따르면, 법령 등에 의하여 설치된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 1일당 150,000원(서면심사 100,000원)을	ㅇ통보
	지급하되, 참석시간이 2시간 이상일 경우에는 1일 1회에	- 각종 위원회 참석
	한하여 50,000원을 추가 지급할 수 있으며, 원격지에서	수당 지급 자체
	참석하는 경우에는 교통비·식비·숙박비를 예산의 범위	규정을 기재부
	내에서 여비(220목) 또는 일반수용비(210.01목)로 추가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도,	재정비 하기 바람
	- 국립국제교육원은 「'18~'21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기획재정부)」과 달리 2016. 7. 1. 1일당 기본급 100,000원	
	외에 200,000원까지 추가 지급할 수 있도록 '국립국제	
	교육원 회의·심사·평가 수당 지급 기준'을 수립하여	
	2019. 1. 11. '18. 상반기 GKS 외국인 우수교환학생	
	장학생 선발 심사수당을 지급하면서 1인기준 250,000원을	
	지급하여 기획재정부 집행지침 보다 100,000원을 과다	
	지급하는 등 【붙임】 "각종 위원회 참석수당 과다 지급	
	현황"과 같이 2018. 1. 11.부터 2021. 5. 감사일 현재	
	까지 위 심사수당 등 각종 위원회 참석 수당 29건,	
	총 195명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면서 기획재정부 집행	
	지침 보다 합계 23,690,000원을 과다하게 지급한 사실이	
	있음	

### 각종 위원회 참석수당 과다 지급 현황

(단위 : 천원)

	지 급 연월일	사 업 명	지급액(원)						
연번			참여	참여		지급액	정당	과다	
		, ,, ,	선생 인원	시간	1인	지급액	지급액	지급액	
		18 상반기 GKS 외국인 우수교환학생		, _	단가	<b>(</b> ①)	(2)	(3=1-2)	
1	2018.01.11	장한기 GNS 외국인 구구교환약생 장학생 선발 심사 수당	4	6	250	1,000	600	400	
2	2018.03.29	-	6	4	200	1,200	900	300	
3	2018.04.26	-	6	4	200	1,200	900	300	
4	2018.06.26	-	39	8 초과	300	11,700	5,850	5,850	
5	2018.07.09	-	5	8 초과	300	1,500	750	750	
6	2018.07.26	-	5	4	200	1,000	750	250	
7	2018.09.10	-	3	4	200	600	450	150	
8	2018.10.12	-	3	4	200	600	450	150	
9	2019.01.15	-	4	8 초과	300	1,200	600	600	
10	2019.03.20	-	2	4	200	400	300	100	
11	2019.04.04	-	3	4	200	600	450	150	
12	2019.04.04	-	6	6	250	1,500	900	600	
13	2019.04.08	-	3	4	200	600	450	150	
14	2019.04.25	-	3	4	200	600	450	150	
15	2019.04.25	-	3	4	200	600	450	150	
16	2019.04.26	-	5	6	250	1,250	750	500	
17	2019.08.01	-	7	4	200	1,400	1,050	350	
18	2019.10.29	-	3	8 초과	300	900	450	450	
19	2019.11.19	-	3	8 초과	300	900	450	450	
20	2019.11.19	-	1	4	200	200	150	50	
21	2019.11.22	-	3	8 초과	300	1,890	450	1,440	
22	2019.12.16	-	4	8 초과	300	1,200	600	600	

	지 급 연월일		지급액(원)					
연번			참여	참여		지급액	정당	과다
			인원	시간	1인 단가	지급액 (①)	지급액 (②)	지급액 (③=①-②)
23	2019.12.19	-	4	8 초과	300	1,200	600	600
24	2020.04.06	-	6	6	250	1,500	900	600
25	2020.04.29	-	4	4	200	800	600	200
26	2020.06.30	-	45	8 초과	300	13,500	6,750	6,750
27	2020.08.21	-	6	4	200	1,200	900	300
28	2020.09.01	-	3	8 초과	300	900	450	450
29	2021.04.20	-	6	8 초과	300	1,800	900	900
		합 계	195			52,940	29,250	23,690

기관명 : 국립국제교육원 감사담당

연번	지 적 사 항	처 분
17	정부초청외국인 장학생 중도포기자 장학금 등 미회수	
	○ 「2018~2020년도 정부초청외국인 학부장학생 학사지침」	<① 관련>
	제13조 및 「2018~2020년도 정부초청외국인 장학생	ㅇ주의(2명)
	장학금 지급 세부지침」에 따르면, 장학생이 최초 수학	
	시작 후 3개월 이내에 수학을 포기하면 기존에 받은	<② 관련>
	장학금(입국항공료, 보험료,생활비,한국어연수비 등)을 모두	ㅇ주의(1명)
	반납하도록 되어 있고, 정부초청외국인 장학생 생활비의	, ,(= 3)
	경우 국내체류, 수학여부 등을 확인하여 전문학사 및	<①,② 관련>
	학부생은 매월 초 900,000원의 생활비를 지급 하도록	
	되어 있으며, 일시 출국 등에 따라 생활비 감액 사유가	이시정(회수)
	발생할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감액 지급하도록 되어	- 미 회수된 중도
	있는데도,	포기자 학부장학생
	【중도포기 학부장학생 입국항공료 미회수에 관한 사항】 —①	입국항공료 등 1,912,030원을
	- 국립국제교육원은 2018년 정부초청외국인 학부장학생	1,712,000 년 <u>-</u> 관련자로 부터
	L이 2018. 2월 장학금(2,791,700원)을 지급받고 2018. 3. 1.	회수하여 관련
	학기가 시작된 후 3개월 이내인 2018. 3. 7. 개인사정	회계에 세입 조치
	으로 장학생 포기서를 제출함에 따라 입국항공료	하기 바람
	(953,000원), 생활비(800,000원), 한국어연수비(800,000원),	
	정착지원금(200,000원) 등 총 2,753,000원을 반납 받았	
	어야 함에도 입국항공료 953,000원을 2021. 5. 감사일	
	현재까지 반납받지 않은 사실이 있음.	
	【온라인 수강에 따른 생활비 미회수에 관한 사항】 ——②	
	- 국립국제교육원은 2020학년도 1학기 △△에 재학 중인	
	M이 코로나19로 인해 국내에 입국하지 못하고 본국	

연번	지 적 사 항	처 분
	에서 온라인 수강에 따라, 장학금을 일할 계산하여	
	감액 지급해야 함에도 과다 지급된 생활비 29,030원을	
	반납 받지 않는 등【붙임】'2020년 정부초청외국인	
	장학생 온라인 수강자 장학금 미회수 현황'과 같이	
	2020학년도 1학기 위 M 등 3명이 코로나19로 인해	
	국내에 입국하지 못하고 본국에서 온라인 수강에 따라	
	장학금을 일할 계산하여 감액 지급해야 함에도 과다	
	지급된 생활비 합계 959,030원에 대하여 2021. 5. 감사일	
	현재까지 반납받지 않은 사실이 있음	

#### 【붙임】

### 2020년 정부초청외국인장학생 온라인 수강자 장학금 미회수 현황

(단위 : 원)

온라인					생활비		정당지급액	미회수액
수강기간	성명	국적	수학대학	과정	집행액 (①)	대상액 (②)	산출내역	(3=1-2)
2020학년도 1학기 일부 (20.3.2~6.16.)	M	필리핀	ΔΔ	학사	3,120,000	3,090,970	<20.6.17. 입국> 3월: 900,000원/31일*30일=870,970원 6월: 900,000원/30일*14일=420,000원 7,8월: 1,800,000원	29,030
2020학년도 1학기 전체	-	방글라테시	-	학사	1,770,970	870,970	3월: 900,000원/31일*30=870,967원	900,000
2020학년도 1학기 일부 (20.3.2~5.31.)	-	러시아	-	학사	3,576,660	3,546,660	<'20.5.31.입국> 3월: 900,000원/31일*30일=870,970원 5월: 900,000원/31일*1일=29,030원 6~8월: 2,700,000원 전분기 생활비 공제:-53,340원	30,000
	함	계			8,467,630	7,508,600		959,030

연번	지 적 사 항	처 분
18	정부초청외국인 장학생 동문지원센터 지원인력 채용 부적정	
	ㅇ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 등 관리규정」제8조에	ㅇ경고(2명)
	따르면 채용권자는 채용 기준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서류전형 및 면접에 따라 적격자를 채용하여야 하며, 면접전형을 실시하는 경우 면접위원은 응시자의 인적	ㅇ주의(1명)
	전섭선영을 설시하는 경우 선접되원은 증시자의 선적 정보를 제공받거나 인적사항에 관한 질문을 할 수	
	없도록 되어있고, 이에 대한 내용을 면접위원에게 사전에	
	교육 하도록 되어 있으며, "2019년도 및 2021년도 국립	
	국제교육원 GKS동문지원센터 초단시간근로자 채용	
	계획*"에 따르면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를 별도 시행하는	
	것으로 계획수립 및 채용공고를 하였는데도,	
	* 초단시간근로자 : 소정근로시간이 주당 15시간 미만의 근로자 / 채용기간 : '19.5.13.~'19.8.31.(3개월 18일), 시급10,000원(1일 5 시간 / 주2회 근무), 응모인원: 6명	
	- 국립국제교육원은 2019년도 초단시간근로자 2명의	
	채용심사를 실시하면서 서류심사 없이 2019. 5. 3.(금)	
	면접심사에 서류심사 내용을 포함하여 면접을 실시	
	하였고, 면접심사위원은 2명으로 구성하면서 관련	
	업무 팀장인 N과 O가 면접위원으로 참여하여 면접을 실시하였으며,	
	- 2021년도 GKS동문지원센터 지원인력 단시간기간제	
	근로자 2명을 채용*하기 위한 온라인 면접심사위원을	
	업무담당자인 O 1명을 면접위원으로 구성하여 면접을	
	실시한 사실이 있음	
	* 채용기간: '21.1.1.~'21.6.30.(6개월), 시급10,000원(1일 5시간/ 주2회 근무), 응모인원: 3명	

연번	지 적 사 항	처 분
19	수의계약 체결 부적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7조 제1항,	ㅇ주의(4명)
	「같은 법 시행령」제26조 제1항 제2호 및 제5호에	
	따르면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하려면 일반경쟁에 부쳐야 하고, 예산에 계상된	
	금액 등을 기준으로 추정가격을 산정하며,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용역 계약의 경우 및 특정인의 기술이	
	필요하거나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인뿐인 경우 등	
	경쟁이 성립될 수 없는 경우로 이미 조달된 물품의	
	부품교환 또는 설비확충 등을 위하여 조달하는 경우	
	로서 해당 물품을 제조·공급한 자 외의 자로부터 제조·	
	공급을 받게 되면 호환성이 없게 되는 경우 수의 계약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도,	
	- 국립국제교육원은 '18. 10. 29. '2019년 한국어 능력	
	시험 온라인결제시스템 대행 용역 계약(계약금액: 57,508천원,	
	기간 '18.12.1.~'19.11.30.)'을 ▷▷와 수의계약한 사실이	
	있음	
	※ 위 ▷▷는 '2018년 온라인결제시스템 대행'을 위해 수의계약	
	(긴급입찰)한 업체이고, 국립국제교육원은 2020년 동일한 내용에 대해 일반경쟁 입찰 추진	

연번	지 적 사 항	처 분
20	한·미 대학생 연수(WEST) 프로그램 중도포기자 정부 지원금 반납 미조치	
	○ 「한·미 대학생 연수(WEST) 프로그램 규정('21.4.16.)」 제3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교육원은 참가자의 프로그램 준다 사용 발생 시 지원구 지구은 준다하고	
	프로그램 중단 사유 발생 시 지원금 지급을 중단하고 참가자에게 정부지원금 반납을 요구할 수 있고, 환수금 발생 시 참가자는 환수금 통보가 있은 후 3개월 이내에 재단에 지정된 통화로 환수금을 반납해야 하며, 해당 기간 내 반납하지 아니한 경우 이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는 것으로 되어 있고, 사업 수행을 위해 한국장학재단과 협약 체결한 「한·미취업연수(WEST) 사업 협약서(16.3.8.)」제3조 및「한·미대학생 연수(WEST) 프로그램 규정('21.4.16.)」제24조에 따르면 국립국제교육원은 사업 추진의 총괄기관이고, 한국장학재단은 관리전담기관으로 정부지원금 집행 및환수 업무를 담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도,	○ <b>통보</b> - 재정지원금 미환수 자에 대해 관련 규정에 따라 환수 등 조치를 취하기 바람
	"미반환자 환수 조치 요구(18.4.16.)" 및 "미반환자 내용 증명 결과 보고('18.5.31, '19.7.26, '19.9.26, '20.12.17.)"를 받고도 【붙임】"WEST 정부재정지원금 미환수 대상자 현황"과 같이 중도 포기 등에 따라 환수 결정된 참가자 9명의 정부재정지원금 각각 11,010,550원, 18,209.52달러를 2021. 5월 감사일 현재까지 반납 요구 등 조치를 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붙임】

#### WEST 정부재정지원금 미환수 대상자 현황

연번	년도	프로그램	성명	지급구분	미환수금액	환수사유	비고 (발생시기)		
1	2015	단 기	-	생활비	₩695,250	중도 포기			
	2017	7). 7)		참가비	\$7,120.00	중도 포기	2018-02-08		
2	2017	장 기	-	생활비	₩3,680,000	중도 포기	2018-02-08		
3	2017	플러스	-	참가비	\$430.00	출국 전 포기	2017-10-20		
4	2017	단 기	-	참가비	\$5,750.00	중도 종료	2018-03-13		
5	2017	중 기	-	참가비	\$320.00	출국 전 포기	2017-07-10		
		-1 -1	ار جا	ر ما		참가비	\$1,699.52	중도 포기	2018-02-14
6	2017	장 기	-	생활비	₩4,025,000	중도 포기	2018-02-14		
7	2018	단 기	-	참가비	\$500.00	출국 전 포기	2019-01-16		
8	2018	장 기		참가비	\$200.00	중도 포기	2019-07-19		
0	2016	3 7	3 7	-	생활비	₩1,525,500	중도 포기	2019-07-19	
9	2018	중 기		참가비	\$2,190.00	중도 포기	2019-06-10		
7	2010	0 /1	<del>-</del>	생활비	₩1,084,800	중도 포기	2019-06-10		
	작는데 그리			원화	₩11,010,550				
합계 금액			미화	\$18,209.52					

<sup>※</sup> 비고(발생시기)는 참가자의 중도포기 사유에 따라 환수결정을 하여 ▽▽으로 알린 시기(공문)

연번	지 적 사 항	처 분
21	위탁기관 선정 부적정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7조 제1항에	○기관주의
	따르면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하려면 일반경쟁에 부쳐야 하며「같은 법 시행령」	ㅇ통보
	제43조 제1항에 따르면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	- 위탁 기관 선정 시
	담당공무원은 물품·용역계약을 할 때 계약이행의 전문성·	다수의 공급자가
	기술성·긴급성, 공공시설물의 안전성 및 그 밖에 국가	참여 할 수 있도록
	안보 목적 등의 이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모 등의 경쟁 방식
	다수의 공급자들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한 후	으로 처리하기 바람
	협상절차를 통해 국가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이에 준하여	
	위탁 업무 협약 기관을 선정하여야 하는데도,	
	- 국립국제교육원은 '18. 10. 22. 제10기 한일공동이공계	
	학부유학생 국내 예비교육과정 위탁 교육기관 평가 시	
	직전 위탁기관 공모계획에 기간 종료 후 운영 실적을 평가해 1년 연장 가능하다는 조항에 근거하여 공정한	
	경쟁 절차 없이 평가해 '19년 위탁기관으로 ◁◁을	
	선정한 사실이 있음	

연번	지 적 사 항	처 분
22	원어민 영어보조교사(EPIK) 모집 위탁 계약 관리 소홀	
	ㅇ「(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제29조 제1항 및 제2항에	ㅇ주의(2명)
	따르면,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용역수행	
	기한까지 해당 용역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해지' 할 수 있고, 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즉시 계약	
	상대자에게 통지' 하도록 되어있는데도,	
	- 국립국제교육원은 2020년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모집을	
	위해 공모를 통해 선정(2020. 2. 17.)한 7개의 위탁업체 중	
	◇◇이 계약 기간 중인 2020. 4. 29.에 폐업하여 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하였는데도 2021. 5. 감사일 현재까지	
	'계약 해지' 및 '계약 통보'를 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지 적 사 항	처 분
원어민 영어보조교사(EPIK)·정부초청 영어봉사 장학생 (Talk) 위탁 사업 개인정보 처리현황 점검 미실시	
○「개인정보보호법」제26조 제1항 및 제4항에 따르면,	ㅇ기관경고
개인정보 처리자가 제3자에게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사항'이 포함된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	
체결'등 문서를 바탕으로 업무 처리를 해야 하고,	
위탁자는 업무 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	
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수탁자를 교육하고, 개인정보 '처리현황 점검' 등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도록	
되어있는데도,	
- 국립국제교육원은 "2019년도 EPIK 원어민 영어보조	
교사 모집 위탁"사업의 계약상대자인 ♤♤과 '개인	
정보처리 위탁 계약'을 체결(2019. 2. 25.)한 후, 수탁	
자의 안전한 개인정보 처리 감독을 위한 '처리현황	
점검'을 실시하지 않는 등【붙임】"EPIK·TaLK 개인	
정보처리 업무위탁 업체 개인정보 '처리현황 점검'	
미실시 현황"과 같이 2018년 하반기부터 2020년까지	
위 "2019년도 EPIK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모집 위탁"	
사업 등 6개 용역 사업을 외부 업체에 위탁하면서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기	
위한 개인정보 '처리현황 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변어민 영어보조교사(EPIK)·정부초청 영어봉사 장학생 (Talk) 위탁 사업 개인정보 처리현황 점검 미실시) ○「개인정보보호법」제26조 제1항 및 제4항에 따르면, 개인정보 처리자가 제3자에게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고 밖에 개인정보의 안전한관리를 위한 사항'이 포함된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체결' 등 문서를 바탕으로 업무 처리를 해야 하고, 위탁자는 업무 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수탁자를 교육하고, 개인정보 '처리현황 점검'등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도록되어있는데도, - 국립국제교육원은 "2019년도 EPIK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모집 위탁" 사업의 계약상대자인 요요과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을 체결(2019. 2. 25.)한 후, 수탁자의 안전한 개인정보 처리 감독을 위한 '처리현황점검'을실시하지 않는 등 【붙임】 "EPIK·TaLK 개인정보처리 업무위탁 업체 개인정보 '처리현황점검' 미실시 현황"과 같이 2018년 하반기부터 2020년까지위 "2019년도 EPIK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모집 위탁"사업 등 6개 용역 사업을 외부 업체에 위탁하면서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기위한 개인정보 '처리현황 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붙임】 EPIK·TaLK 개인정보처리 업무위탁 업체 '처리현황 점검' 미실시 현황

사업 구분	연도	사 업 명	개인정보처리 업무위탁 기관	처리 현황 점검
	2019	2019년도 EPIK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모집 위탁	\$\$, -, -, -	미실시
EPIK	2020	2020년도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모집 위탁	<b>ቇ</b> ፟፟፟፟፟፟፟፟፟፟፟	미실시
	2020	2020년 EPIK 온라인 입국전 원격연수학사관리시스템 위탁 운영	-	미실시
	2018	2018년 하반기 TalK 프로그램 만족도 조사	-	미실시
TalK	2019	2019년 TalK 프로그램 만족도 조사	-	미실시
	2020	2020년 TaLK 원어민 장학생 온라인 사전연수 학사관리시스템 위탁 운영	-	미실시

연번	지 적 사 항	처 분
24	일용직 근로자의 근로계약 미체결	
	○ 「근로기준법」제17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ㅇ기관경고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	
	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별도조치>
	근로자에게 교부하도록 되어있고, 「기간제 및 단시간	ㅇ 통보(고용노동부)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17조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제8조, "2018~2021년 표준근로계약서(고용	
	노동부)"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 임금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상여금,	
	사회보험 적용 여부, 근로자의 식비에 관한 사항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교육부와 그 소속	
	기관 공무직 등 관리규정」제11조에 따르면, 채용권	
	자가 공무직 등을 채용하는 경우 채용되는 공무직	
	등과 반드시 서면으로 채용계약을 체결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 국립국제교육원은 2018. 2. 18.부터 2018. 2. 28.까지	
	P를 ○ 관련 업무지원을 위해 '일용직'으로 채용하면서	
	근로조건 등에 관한 '채용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등	
	【붙임】"일용직 채용계약 미체결 현황"과 같이	
	2018. 2.부터 2019. 12.까지 위 P 등 46명을 '일용직'	
	으로 채용하면서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붙임】

### 일용직 채용계약 미체결 현황

연번	부서	근로자	근무시작일	근무종료일	신분	근로계약 체결여부
1	0	Р	2018.2.18.	2018.2.28.	일용직	미체결
2	-	-	2018.2.18.	2018.2.28.	일용직	미체결
3	-	-	2018.2.18.	2018.2.28.	일용직	미체결
4	-	-	2018.2.18.	2018.2.28.	일용직	미체결
5	-	-	2018.2.18.	2018.2.28.	일용직	미체결
6	-	-	2018.2.18.	2018.2.28.	일용직	미체결
7	-	-	2018.2.18.	2018.2.28.	일용직	미체결
8	-	-	2018.2.18.	2018.2.28.	일용직	미체결
9	-	-	2018.2.18.	2018.2.28.	일용직	미체결
10	-	-	2018.2.18.	2018.2.28.	일용직	미체결
11	-	-	2018.2.18.	2018.2.28.	일용직	미체결
12	-	-	2018.2.18.	2018.2.28.	일용직	미체결
13	-	-	2018.2.18.	2018.2.28.	일용직	미체결
14	-	-	2018.2.18.	2018.2.28.	일용직	미체결
15	-	-	2018.2.18.	2018.2.28.	일용직	미체결
16	-	-	2018.2.18.	2018.2.28.	일용직	미체결
17	-	-	2018.2.18.	2018.2.28.	일용직	미체결
18	-	-	2018.2.18.	2018.2.28.	일용직	미체결
19	-	-	2018.2.18.	2018.2.28.	일용직	미체결
20	-	-	2018.2.18.	2018.2.28.	일용직	미체결
21	-	-	2018.2.18.	2018.2.28. 일용직		미체결
22	-	-	2018.2.18.	2018.2.28.	일용직	미체결

연번	부서	근로자	근무시작일	근무종료일	신분	근로계약 체결여부
23	-	-	2018.2.18.	2018.2.28.	일용직	미체결
24	-	-	2018.2.18.	2018.2.28.	일용직	미체결
25	-	-	2018.3.9.	2018.3.30.	일용직	미체결
26	-	-	2018.4.9.	2018.5.4.	일용직	미체결
27	-	-	2018.4.9.	2018.5.4.	일용직	미체결
28	-	-	2018.4.9.	2018.5.4.	일용직	미체결
29	-	-	2018.4.9.	2018.5.4.	일용직	미체결
30	-	-	2018.4.9.	2018.5.4.	일용직	미체결
31	-	-	2018.4.9.	2018.5.4.	일용직	미체결
32	-	-	2018.3.23.	2021.5.4.	일용직	미체결
33	-	-	2018.10.30.	2018.11.30.	일용직	미체결
34	-	-	2018.10.30.	2018.11.30.	일용직	미체결
35	-	-	2019.4.3.	2019.5.24.	일용직	미체결
36	-	-	2019.4.8.	2019.5.14.	일용직	미체결
37	-	-	2019.4.8.	2019.5.14.	일용직	미체결
38	-	-	2019.4.8.	2019.5.14.	일용직	미체결
39	-	-	2019.4.8.	2019.5.14.	일용직	미체결
40	-	-	2019.4.8.	2019.5.14.	일용직	미체결
41	-	-	2019.4.8.	2019.5.14.	일용직	미체결
42	-	-	2020.3.20.	2020.4.3.	일용직	미체결
43	-	-	2019.3.11.	2019.3.29.	일용직	미체결
44	-	-	2018.3.9.	2018.3.29.	일용직	미체결
45	-	-	2019.12.2.	2019.12.24.	일용직	미체결
46	-	-	2019.12.2.	2019.12.24.	일용직	미체결

연번	지 적 사 항	처 분
25	원어민영어보조교사(EPIK) 표준고용계약서 세부 내용 작성 미흡	
	ㅇ 「근로기준법」제17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ㅇ기관주의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	
	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도록 되어 있고,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17조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제8조, "2018~2021년 표준근로계약서(고용	
	노동부)"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 임금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상여금,	
	사회보험 적용 여부, 근로자의 식비에 관한 사항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 국립국제교육원은 시·도교육청의 EPIK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의 계약업무 처리를 위한 "2018 EPIK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표준고용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임금	
	지급방법', '사회보험 적용 여부' 등을 '표준고용계약서'에	
	명시하지 않고 시·도교육청에 배포하는 등【붙임】	
	"EPIK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표준고용계약서 항목	
	미포함 내역"과 같이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시·도	
	교육청으로 배포된 'EPIK 원어민 영어보조교사'의	
	계약 업무 처리를 위한 표준고용계약서에 '임금지급	
	방법'등 5개 항목을 명시하지 않고 시·도교육청에	
	배포한 사실이 있음	

[붙임]
EPIK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표준고용계약서 항목 미포함 내역

항 목	EPIK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표준고용계약서 포함 여부
임금지급방법	미포함
사회보험 적용여부	미포함
상 여 금	미포함
근로자 식비	미포함
가족수당의 지급	미포함

연번	지 적 사 항	처 분
26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 사업 관리감독 부적정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5조,「교육부 국고보조	【①, ②관련】
	사업 관리규정」제4조에 따르면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	ㅇ경고(2명)
	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할 수 있고, 보조사업자 관리	【①관련】
	감독 및 보조사업의 집행점검 등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특수외국어 교육	ㅇ주의(1명)
	진흥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르면 특수외국어에 관한	
	전문성과 교육역량을 갖춘 학교를 특수외국어 전문	
	교육기관(이하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특수외국어 전문교육기관 사업관리운영 규정('18.4.)」	
	제36조 및 제38조, 「특수외국어 전문교육기관 사업비	
	관리 및 운영 지침('18.4.)」에 따르면 전문교육기관은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 사업계획에 따라 인건비, 장학금,	
	교육과정(프로그램) 개발·운영비(교재 개발 등), 교육	
	환경개선비, 실험실습기자재 구입운영비 등 비목으로	
	사업비를 편성하여 집행하고, 장학금은 선정된 특수	
	외국어 학과(학부) 및 대학원 재학생에게 등록금 부담을	
	줄여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경비로써	
	▽▽에서 규정한 학자금 이중지원의 범위를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으며, 「특수외국어교육진홍사업 사업비	
	관리 및 운영(집행) 지침(●●, '20.3.)」에 따르면 교육	
	과정(프로그램) 개발·운영비는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을	
	위한 교재개발비(원고료) 등으로 집필마감 이후 6개월	
	이내 출판 완료된 저작물에 대해서만 지급(개발비는	

연번	지 적 사 항	처 분	<u>.</u>
	결과물 제출 후 지급)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도,		
	※ 「특수외국어 전문교육기관 협약('18.5.23.)」에 따라 ☆☆·■■ 컨소시엄, &&, ●● 등 4개 대학이 전문교육기관으로 선정		
	【장학금 초과 지급 관련】①		
	- 국립국제교육원은 육육 및 ☆☆가 2019년, 2020년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 사업을 수행하면서 【붙임1】		
	"장학금 이중지원 범위 한도 초과 장학금 지급 현황"과		
	같이 2020. 2.부터 2021. 2.까지 Q 등 5명에게 특수		
	외국어 학과 신입생 유치 확대를 목적으로 특수외국어		
	학·석사 연계 장학금을 ▽▽ 학자금 이중지원 범위		
	한도를 최소 909천원에서 최대 4,604천원까지 초과		
	하여 합계 12,745천원을 지급하였음에도 이와 같은		
	사실을 파악하지 못하는 등 보조사업 집행점검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으며,		
	【교육과정 개발·운영비(교재개발비) 선지급 관련】②		
	- ●●가 2020년도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사업을 수행		
	하면서 R에게 교재(ㄱ)가 출판 완료되기 전인 2020. 12. 8.		
	교재개발비 4,000천원을 선지급 하는 등 【붙임2】		
	"미출판 교재개발비 선지급 현황"과 같이 2020. 12. 8.		
	부터 2020. 12. 17.까지 위 R 등 19명에게 위 ㄱ 등		
	총 8건, 교재개발비 합계 40,000천원을 교재가 출판		
	되지도 않은 채 선지급하였음에도 이와 같은 사항을		
	파악하지 못하는 등 보조사업 집행점검 등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 【붙임1】

### 장학금 이중지원 범위 한도 초과 장학금 지급 현황

(단위 : 천원)

					개인별	개인별 장학금 지급내역		최그지치게다 치기그	기그 <b>크</b> 키그
기관명	지급일자	학과	학번	대상자	특수외국어 학·석사 연계 장학금	교내·외 기타 장학금	합계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이중지원 범위 한도	초과 급액
	2020.02.13				3,000	1,078	4,078	3,236	842
	2020.08.25	-	-	Q	3,000	2,690	5,690	4,781	909
	2021.02.09				3,000	2,090	5,090	4,181	909
			소계			14,858	12,198	2,660	
	2020.08.25 2021.02.09			3,000	2,090	5,090	4,181	909	
දු දු			3,000	3,344	6,344	4,181	2,163		
	- 소계						11,434	8,362	3,072
	2020.08.25				3,000	3,236	6,236	3,236	3,000
	2021.02.09	_	3,000	1,840	4,840	3,236	1,604		
	- 소계						11,076	6,472	4,604
	2021.02.09	1	-	-	3,000	2,090	5,090	4,181	909
<b>☆☆</b>	2020.11.13	-	-	-	1,500	3,351	4,851	3,351	1,500
		합계			25,500	21,809	47,309	34,564	12,745

#### 【붙임2】

### 미출판 교재개발비 선지급 현황

(단위 : 천원)

연번	연도	학교명	미출판 교재명	지급액	지급일자	직급	지급대상	비고										
				4,000		-	R											
1			٦	500	2020.12.08	-	-	미출판 ※ (교재명 변경) -										
				500		-	-	* (EAO CO)										
				2,500	2020 12 00	-	-	미호피										
2			-	2,500	2020.12.08	-	-	미출판										
3			-	5,000	2020.12.08	-	-	미출판										
				4,000		-	-											
4			-	500	2020.12.08	-	-	미출판 ※ (교재명 변경) -										
				500		-	-	※ (교세당 현상) -										
5			-	5,000	2020.12.16	-	-	출판('21.5.27.) ※ (교재명 변경) -										
	2020	••	••	••	••		2,500	2020 12 17	-	-								
6			-	2,500	2020.12.16	2020.12.16	-	미출판										
				2,000	2020.12.17	-	-											
	460 -				-													
7															460	-	-	미호교
′					<del>-</del>	600	2020.12.16	-	-	미출판								
						480	-	-										
				1,000		-	-											
				3,000		-	-											
8	8	- 1,000	1,000	2020.12.16	-	-	미출판											
			1,000	1,000		-	-											
Ť	합계			40,000														

연번	지 적 사 항	처 분
27	행정재산 사용허가 부적정	
	○ 「국유재산법」제30조 제1항 및 제32조에 따르면 행정	ㅇ기관주의
	재산은 그 용도나 목적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	
	에서 사용을 허가할 수 있고, 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한	ㅇ통보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과 산출방법에 따라	- 소속 직원의 기숙사
	매년 사용료를 징수한다고 되어 있으며, 「국립국제교육원	사용에 대한 기준을
	시설 사용허가 관한 지침, 및 「제주영어교육센터 시설물	마련하기 바람
	사용 규정」에 따르면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자체 규정	
	에서 정하고 있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사용료를 납부	
	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 국립국제교육원은 파견공무원에게 기숙사를 무료로	
	제공한다는 내부결재 공문을 통해 2018. 1. 1.부터	
	2018. 12. 31.까지 S에게 행정재산인 기숙사를 무상	
	으로 사용하게 하는 등【붙임】"소속 직원 기숙사	
	무상 사용 현황"과 같이 2018. 1. 1.부터 2021. 5.	
	감사일 현재까지 위 S 등 소속 직원 30명에게 근무 기간 동안 기숙사를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사실이	
	있음	
	<i>ж</i> п	

【붙임】

### 소속 직원 기숙사 무상 사용 현황

연번	성명	소속(부서)	직	사용장소	사용기간	비고
1	S	-	-	기숙사 311호	2018.01.01.~2018.12.31.	파견공무원
2	-	-	-	기숙사 312호	2018.01.01.~2018.07.01.	파견공무원
3	-	-	-	기숙사 312호	2018.01.01.~2018.12.31.	파견공무원
4	-	-	-	기숙사 311호	2018.03.01.~2019.02.28.	파견공무원
5				기숙사 307호	2018.03.07.~2018.06.30.	파견공무원
3	-	-	-	기숙사 312호	2019.04.08.~2019.08.31.	의 파선중구천 -
6	-	-	-	기숙사 309호	2018.07.01.~2019.06.30.	파견공무원
7	-	-	-	기숙사 312호	2019.07.20.~2020.06.30.	파견공무원
8	-	-	-	기숙사 311호	2019.09.16.~2020.09.15.	파견공무원
9	-	-	-	기숙사 311호	2019.09.16.~2020.09.15.	파견공무원
10	-	-	-	기숙사 311호	2020.01.01.~2021.12.31.	파견공무원
11	-	-	-	기숙사 310호	2020.03.01.~2021.02.25.	파견공무원
12	-	-	-	기숙사 312호	2020.03.01.~2021.02.25.	파견공무원
13	-	-	-	기숙사 311호	2020.07.01.~2021.06.30.	파견공무원
14	-	-	-	기숙사 312호	2020.11.12.~2021.09.30.	파견공무원
15	-	-	-	기숙사 310호	2021.02.28.~2022.02.28.	파견공무원
16	-	-	-	기숙사 101호	2017.03.01.~2019.02.28.	파견공무원
17	-	-	-	기숙사 201호	2018.03.01.~2019.02.28.	파견공무원
18	-	-	-	기숙사 301호	2018.03.01.~2020.02.29.	파견공무원
19	-	-	-	기숙사 106호	2018.03.01.~2020.02.29.	파견공무원
20	-	-	-	기숙사 105호	2018.11.12.~2019.03.31.	파견공무원
21	-	-	-	기숙사 109호	2019.03.01.~2020.02.29.	파견공무원
22	-	-	-	기숙사 107호	2019.03.01.~2021.02.28.	파견공무원
23	-	-	-	기숙사 110호	2019.03.01.~2021.02.28.	파견공무원
24	-	-	-	기숙사 201호	2019.08.05.~2020.02.29.	기간제근로자
25	-	-	-	기숙사 101호	2019.08.01.~2020.02.21.	기간제근로자
26	-	-	-	기숙사 101호	2020.03.01.~2021.02.28.	파견공무원
27	-	-	-	기숙사 106호	2020.03.01.~2021.02.28.	파견공무원
28	-	-	-	기숙사 105호	2021.03.01.~현재	파견공무원
29	-	-	-	기숙사 106호	2021.03.01.~현재	파견공무원
30	-	-	_	기숙사 107호	2021.03.01.~현재	기간제근로자

연번	지 적 사 항	처 분
28	계약체결 부적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7조 제1항 및	ㅇ기관주의
	제22조에 따르면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	
	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하려면 일반경쟁에 부쳐야 하고,	ㅇ통보
	일정 기간 계속하여 제조, 수리, 가공, 매매, 공급, 사용	- 연간 추정가격이
	등의 계약을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해당 연도 예산의	2천만원을 초과
	범위에서 단가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하는 같은 종류의
	「같은 법 시행령」제26조 제1항 및 제30조 제1항에	용역에 대해서는
	따르면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용역계약의 추정가격이	단가계약 등 일반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인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을	경쟁을 통해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고 되어있는데도,	체결하는 방안을
	- 국립국제교육원은 '영어상용화 교육', '학생 영어캠프',	마련하여 시행하기
	'영어교사 심화연수' 등 매년도 1년 단위의 영어교육	바람
	센터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각 연수 과정을 운영	
	하면서 필요한 전세버스 임차, 연수생의 식사 공급은	
	일정 기간 반복되는 같은 종류의 사업에 해당하여 1년	
	단위의 전체 사업에 대해 일괄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에도 단순히 개별 연수 과정이 시기적으로 나누어	
	진다는 이유로 2018. 1. 4. ▲▲과 '중학생 영어캠프	
	전세버스 임차 계약(계약금액 1,650천원)'을 1인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으로 체결하는 등 【붙임1】"일반경쟁	
	대상 용역 분할발주 현황(버스 임차)"과 같이 2018. 1.	
	부터 2021. 4.까지 위 '중학생 영어캠프 전세버스 임차	
	계약' 등 연간 추정가격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전세	
	버스 임차 계약 용역 총 70건, 합계 130,965천원을	

연번	지 적 사 항	처 분
	분할하여 1인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으로 체결하였고,	
	【붙임2】 "일반경쟁 대상 용역 분할발주 현황(식사	
	공급)"과 같이 연수생의 식사 제공을 위한 케이터링	
	비용이 연간 추정가격 2천만원을 초과하는데도 별도의	
	계약체결 없이 2018. 1.부터 2021. 4.까지 총 42건,	
	합계 123,411천원을 매 연수과정이 종료된 후 정부	
	구매카드로 대금을 결제한 사실이 있음	

#### 【붙임1】

#### 일반경쟁 대상 용역 분할발주 현황(버스 임차)

(단위:천원)

연번	건명	요구일자	계약일자	금액	 업체명	업종	l:전원) <b>비고</b>
1	중학생 영어캠프 전세버스 임차	2017-12-21	2018-01-04	1,650	<b>A A</b>	전세바스운송	
2	-	2018-01-22	2018-01-24	1,650	<b>A A</b>	전세바스운송	
3	-	2018-01-24	2018-01-25	1,650	<b>A A</b>	전세버스운송	
4	-	2018-02-21	2018-02-21	275	<b>A A</b>	전세바스운송	
5	-	2018-03-06	2018-03-07	1,650	<b>A A</b>	전세버스운송	
6	-	2018-04-17	2018-04-19	1,650	<b>A A</b>	전세버스운송	
7	-	2018-04-24	2018-04-27	12,980	<b>A A</b>	전세버스운송	
8	-	2018-05-28	2018-05-28	330	<b>A A</b>	전세버스운송	
9	-	2018-07-09	2018-07-09	1,320	<b>A A</b>	전세버스운송	
10	-	2018-07-19	2018-07-23	3,300	<b>A A</b>	전세버스운송	
11	-	2018-07-03	2018-07-05	1,650	<b>A A</b>	전세버스운송	
12	-	2018-06-08	2018-06-14	1,140	<b>A A</b>	전세비스운송	
13	-	2018-08-02	2018-08-03	1,045	<b>A A</b>	전세버스운송	
14	-	2018-10-17	2018-10-17	330	<b>A A</b>	전세버스운송	
15	-	2018-10-10	2018-10-10	550	<b>A A</b>	전세버스운송	
16	-	2018-10-05	2018-10-15	1,760	<b>A A</b>	전세버스운송	
17	-	2018-10-19	2018-10-25	1,155	<b>A A</b>	전세버스운송	
18	-	2018-10-31	2018-10-31	990	<b>A A</b>	전세버스운송	
19	-	2018-10-29	2018-10-25	2,200	<b>A A</b>	전세버스운송	
20	-	2018-11-05	2018-11-08	1,045	<b>A A</b>	전세버스운송	
21	-	2018-10-20	2018-10-25	1,650	<b>A A</b>	전세바스운송	
22	-	2018-11-05	2018-11-05	715	<b>A A</b>	전세버스운송	
23	-	2018-11-14	2018-11-19	1,320	<b>A A</b>	전세버스운송	
24	-	2018-11-29	2018-11-29	1,575	<b>A A</b>	전세버스운송	
25	-	2018-12-13	2018-12-21	1,650	<b>A A</b>	전세버스운송	
	소계(2018년)			43,580			
26	-	2019-01-21	2019-01-25	1,320	<b>A A</b>	전세버스운송	
27	-	2019-01-07	2019-01-11	4,235	<b>A A</b>	전세버스운송	
28	-	2019-02-13	2019-02-15	1,430	<b>A A</b>	전세바스운송	
29	-	2019-01-22	2019-01-28	1,320	<b>A A</b>	전세버스운송	
30	<del>-</del>	2019-03-18	2019-03-18	330	<b>A A</b>	전세버스운송	
31	-	2109-03-08	2019-03-18	1,650	<b>A A</b>	전세바스운송	
32	-	2019-03-19	2019-03-29	1,650	<b>A A</b>	전세버스운송	
33	-	2019-04-11	2019-04-16	1,320	<b>A A</b>	전세비스운송	
34	-	2019-03-14	2019-03-29	1,650	<b>A A</b>	전세바스운송	
35	-	2019-04-16	2019-04-19	1,430	<b>A A</b>	전세버스운송	

연번	건명	요구일자	계약일자	금액	업체명	업종	비고
36	-	2019-04-30	2019-04-30	825	<b>A A</b>	전세버스운송	
37	-	2019-05-17	2019-05-21	2,310	<b>A A</b>	전세버스운송	
38	-	2019-04-18	2019-04-18	880	<b>A A</b>	전세버스운송	
39	-	2019-06-05	2019-06-05	1,650	<b>A A</b>	전세버스운송	
40	-	2019-05-14	2019-06-11	3,300	<b>A A</b>	전세버스운송	
41	-	2019-06-20	2019-07-01	1,650	<b>A A</b>	전세버스운송	
42	-	2019-07-31	2019-07-31	660	<b>A A</b>	전세버스운송	
43	-	2019-04-18	2019-04-18	880	<b>A A</b>	전세버스운송	
44	-	2019-10-24	2019-10-24	1,485	<b>A A</b>	전세버스운송	
45	-	2019-10-10	2019-10-10	1,100	<b>A A</b>	전세버스운송	
46	-	2019-09-18	2019-09-18	715	<b>A A</b>	전세비스운송	
47	-	2019-10-07	2019-10-16	1,430	<b>A A</b>	전세버스운송	
48	-	2019-04-18	2019-04-18	880	<b>A A</b>	전세버스운송	
49	-	2019-10-14	2019-11-29	1,650	<b>A A</b>	전세버스운송	
50	-	2019-11-01	2019-12-04	1,150	<b>A A</b>	전세버스운송	
	소계(2019년)			36,900			
51	-	2020-01-15	2020-01-17	3,190	<b>A A</b>	전세버스운송	
52	-	2019-12-06	2019-12-12	2,750	<b>A A</b>	전세버스운송	
53	-	2020-01-02	2020-01-03	1,705	<b>A A</b>	전세버스운송	
54	-	2020-01-13	2020-01-16	1,650	<b>A A</b>	전세버스운송	
55	-	2020-05-06	2020-05-14	1,650	<b>A A</b>	전세버스운송	
56	-	2020-05-20	2020-05-22	2,090	<b>A A</b>	전세버스운송	
57	-	2020-06-04	2020-06-11	2,915	<b>A A</b>	전세버스운송	
58	-	2020-06-15	2020-06-17	3,190	<b>A A</b>	전세비스운송	
59	-	2020-05-22	2020-05-22	990	<b>A A</b>	전세비스운송	
60	-	2020-05-22	2020-05-22	935	<b>A A</b>	전세비스운송	
61	-	2020-07-20	2020-07-21	1,815	<b>A A</b>	전세비스운송	
62	-	2020-07-30	2020-08-03	3,245	<b>A A</b>	전세비스운송	
63	-	2020-07-28	2020-07-29	5,885	<b>A A</b>	전세비스운송	
64	-	2020-07-06	2020-07-07	3,300	<b>A A</b>	전세비스운송	
65	-	2020-11-10	2020-11-10	5,440	<b>A A</b>	전세비스운송	
66	-	2020-05-22	2020-05-22	935	<b>A A</b>	전세버스운송	
	소계(2020년)			41,685			
67	-	2021-01-21	2021-01-25	2,420	<b>A A</b>	전세버스운송	
68	-	2021-03-25	2021-04-05	1,650	<b>A A</b>	전세버스운송	
69	-	2021-03-30	2021-04-12	1,760	<b>A A</b>	전세버스운송	
70	-	2021-03-31	2021-04-19	1,320	<b>A A</b>	전세버스운송	
	소계(2021년)			7,150			
	합계						

#### 【붙임2】

#### 일반경쟁 대상 용역 분할발주 현황(식사 공급)

(단위:천원)

연번	건명	요구일자	계약일자	금액	업체명	업종	비고
1	-	2018-02-28	2018-03-20	2,809	-	음식점업	
2	-	2018-04-05	2018-04-30	1,566	_	음식점업	
3	-	2018-04-20	2018-05-18	7,800	-	음식점업	
4	-	2018-04-20	2018-05-25	7,800	_	음식점업	
5	-	2018-06-07	2018-07-02	2,367	_	음식점업	
6	-	2018-06-28	2018-07-13	2,160	_	음식점업	
7	_	2018-07-19	2018-07-27	4,680	_	음식점업	
8	_	2018-09-20	2018-10-26	2,000	_	음식점업	
9	-	2018-10-22	2018-11-10	2,240	_	음식점업	
10	_	2018-11-12	2018-11-26	954	_	음식점업	
11	_	2018-11-28	2018-12-14	1,970	_	음식점업	
- 11	소계(2018년)	2010 11 20	2010 12 11	36,346			
12	-	2018-12-11	2019-01-11	4,312	_	음식점업	
13	_	2019-01-03	2019-01-18	5,600		음식점업	
14		2019-01-03	2019-01-18	2,484		음식점업	
15		2019-01-17	2019-02-01	1,856		음식점업	
16	-	2019-01-21	2019-02-26	1,008		음식점업	
17	_	2019-04-04	2019-05-17	1,000		음식점업	
18	-	2019-04-08	2019-04-25	2,304	<del>_</del>	음식점업	
19	-	2019-04-10	2019-04-19	1,620	<del>_</del>	음식점업	
20	-	2019-04-10	2019-05-10	2,960		음식점업	
21	-	2019-04-11	2019-05-10	1,980	-	음식점업	
22	-	2019-00-20	2019-07-20	1,260	-	음식점업	
23	-	2019-07-30	2019-08-09	1,480	<u>-</u>	음식점업	
23	-	2019-09-17	2019-10-24			음식점업	
25	-	2019-10-01	2019-11-13	1,440			
25	- 太司(20101년)	2019-10-11	2019-12-13	2,106		음식점업	
26	소계(2019년)	2010 12 02	2020-01-17	31,410		비칠 소리어	
26 27	-	2019-12-03	2020-01-17	4,032		반찬소매업	
	-	2019-12-23		2,160		반찬소매업	
28	-	2020-01-08	2020-02-05	1,890		반찬소매업	
29	-	2020-01-15	2020-01-22	3,920	-	반찬소매업	
30	-	2020-05-06	2020-05-22	2,070	-	반찬소매업	
31	-	2020-05-19	2020-06-05	4,416	-	반찬소매업	
32	-	2020-06-03	2020-06-16	3,380	-	반찬소매업	
33	-	2020-06-15	2020-07-03	3,726	-	반찬소매업	
34	-	2020-07-03	2020-07-31	5,175	-	반찬소매업	
35	-	2020-07-20	2020-07-30	3,393	-	반찬소매업	
36	-	2020-07-27	2020-08-03	5,472	-	반찬소매업	
37	-	2020-07-29	2020-08-21	3,933	-	반찬소매업	
38		2020-11-04	2020-11-16	2,800	-	반찬소매업	
	소계(2020년)	2024 24 24	2024 22 2 :	46,367		יאר בובו	
39	-	2021-01-21	2021-02-04	3,696	=	반찬소매업	
40	-	2021-03-24	2021-04-09	1,911	-	반찬소매업	
41	-	2021-03-25	2021-04-16	1,800	-	반찬소매업	
42	-	2021-03-29	2021-04-23	1,881	=	반찬소매업	
	소계(2021년)			9,288 123,411			
	합계						

연번	지 적 사 항	처 분
29	연수경비 편성 및 집행 부적정	
	ㅇ「국가재정법」제16조에 따르면 정부는 예산을 편성	ㅇ통보
	하거나 집행할 때에는 재정건전성의 확보 및 국민부담의	- 영어교육센터에
	최소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예산안 편성 및	소속된 연수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및「예산 및 기금운	담당자의 식비는
	용계획 집행지침」에서 정하는 목별 지침과 세출과목	연수경비에 편성
	구분에 따라 공무원의 정규근무시간 중 급식비는	하지 않도록 관리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8조에 따라 정액	하기 바람
	급식비를, 정규근무시간 이전 또는 이후의 급식비는	
	특근매식비 지급 기준에 따라 예산을 편성·집행하여야	
	한다고 되어있는데도,	
	- 국립국제교육원은 2018. 1. 29.부터 2. 2.까지 "초등영어	
	교사 심화연수(1기)" 과정을 운영하면서 영어교육센터	
	소속 연수담당자의 식비(조·중·석식 모두 포함)를 위탁기관이	
	부담하도록 연수경비에 포함시켜 예산을 편성·집행하는	
	등【붙임】"연수운영진 식비 예산 편성 현황"과 같이	
	2018. 1. 29.부터 2021. 5. 감사일 현재까지 위 "초등영어	
	교사 심화연수(1기)" 등 총 35회의 연수 과정을 운영하면서	
	영어교육센터 소속 연수담당자 포함 총 178명의 연수	
	운영진 식비 합계 30,363천원을 위탁기관이 부담하도록	
	연수경비에 포함시켜 편성·집행한 사실이 있음	

#### 【붙임】

### 연수운영진 식비 예산 편성 현황

(단위:명/천원)

							명/선원
연번	연수과정	연수기간	연수 일수	연수 인원	담당자 인원	금액	비고
1	초등영어교사 심화연수(1기)	′18.01.29.~02.02.	5	23	5	615	
2	-	′18.02.05.~02.09.	5	23	5	705	
3	-	′18.03.12.~03.16.	5	23	5	735	
4	-	'18.04.23.~04.27.	5	18	5	670	
5	-	'18.07.09.~07.13.	5	20	5	585	
6	-	'18.07.23.~07.27.	5	48	5	735	
7	-	′18.10.29.~11.02.	5	15	5	660	
8	-	′18.11.23.~11.24.	2	46	5	290	
9	-	'18.12.10.~12.14.	5	19	5	586	
10	-	′19.01.28.~02.01.	5	22	5	615	
11	-	'19.02.25.~02.26.	2	51	5	340	
12	-	<b>'</b> 19.03.25.~03.29.	5	18	5	750	
13	-	'19.04.08.~04.12.	5	16	5	915	
14	-	′19.04.15.~04.19.	5	15	5	705	
15	-	′19.06.17.~06.21.	5	21	5	800	
16	-	<b>'</b> 19.07.08.~07.12.	5	41	7	1,211	
17	-	<i>'</i> 19.07.22.~07.26.	5	15	5	695	
18	-	′19.08.07.~08.09.	3	19	9	765	
19	-	′19.12.09.~12.13.	5	21	5	765	
20	-	'19.12.16.~12.20.	5	11	5	695	
21	-	′20.01.06.~01.10.	5	22	5	670	
22	-	′20.02.03.~02.07.	5	16	5	750	
23	-	′20.05.18.~05.22.	5	19	5	711	
24	-	′20.05.25.~06.05.	10	18	5	1,280	
25	-	′20.06.15.~06.26.	10	8	5	2,100	
26	-	′20.06.22.~07.03.	10	15	5	1,538	
27	-	′20.07.20.~07.31.	10	20	5	1,535	
28	-	′20.07.27.~07.31.	5	32	5	671	
29	-	′20.08.03.~08.13.	9	28	5	1,455	
30	-	′20.08.10.~08.21.	10	13	5	1,533	
31	-	′20.11.16.~11.27	12	11	3	1,080	
32	-	′21.01.25.~02.05.	10	17	4	1,016	
33	-	′21.04.05.~04.09.	5	16	5	805	
34	-	′21.04.12.~04.16.	5	15	5	692	
35	-	′21.04.19.~04.23.	5	14	5	690	
	합계			749	178	30,363	